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7조(구명구 등)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7조(구명구 등) · 조문 원문 해당 부분

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(救命裝具)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**필요한 조치**를 하여야 한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1. 7.